부산광역시 수영구 명예감사관 운영 규칙

(제정) 2008.05.23 규칙 제 386호 (일부개정) 2019.11.08 규칙 제589호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구정 감시기능 강화와 생활현장에서 발생한 불편사항, 공무원의 부조리·비리 제보 등의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명예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9.11.8>
- 제2조(구성 등)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명예감사관(이하 "명예감사관"이라 한다)은 비상근·무보수 명예직으로 구민 불편·불만 사항 제보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위촉한 사람을 말하며,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 <개정 2019.11.8>
 - ② 명예감사관은 부산광역시 수영구(이하 "구" 라 한다)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 다만, 명예감사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에 생활 근거지를 둔 자를 위촉할 수 있다.
 - 1. 공개모집에 응모하여 선정된 자
 - 2.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일반주민 중에서 동장이 추천한 자
 - ③ 구청장은 명예감사관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. <신설 2019.11.8>
 - ④ 명예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1.8>
- 제2조의2(명예감사관증 등) ① 구청장은 명예감사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을 증명하는 명예감사관증을 교부한다.
 - ② 명예감사관은 직무를 수행할 경우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하며, 임기가 만료되거나 위촉이 해제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9.11.8]

- 제2조의3(해촉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명예감사 관을 해촉할 수 있다.
 - 1.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
 - 2. 신체·정신상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
 - 3.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
 - 4. 그 밖에 명예감사관으로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

[본조신설 2019.11.8]

- 제3조(역할 및 비밀엄수) ① 명예감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위법·부당한 행정처리,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신고
 - 2.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건의 및 처리방안 제시
 - 3. 불합리한 법령,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
 - 4. 각종 공사현장에 대한 확인 및 시정 건의
 - 5. 선행 우수 공무원의 추천
 - 6.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
 - ② 명예감사관은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9.11.8> [제목개정 2019.11.8]
- 제4조(제보 등) ① 명예감사관은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제보·건의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제보·건의는 구두, 문서, 전자문서, 전화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히거나 명시하여야 한다.

- 1. 제보자의 이름, 주소 및 전화번호
- 2. 관계행정기관의 명칭, 관련공무원 인적사항
- 3.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
- 4. 그 밖의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
- 제5조(제보사항 등의 처리) ① 명예감사관의 제보·건의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·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1.8>
 - 1. 구민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
 - 2. 구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
 - 3. 그 밖에 관련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
 - ② 제1항에 따른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감사부서와 명예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11.8>
 - ③ 명예감사관의 제보·건의사항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기한 내에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별도 기한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.
 - ④ 제5조에 따른 제보·건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.
 - 1. 구의회에 관한 사항
 - 2.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
 - 3.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
 - 4.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. 다만,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5.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
- **제6조(간담회 등)** 구청장은 명예감사관의 사명감 부여 및 사기진작을 위해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1.8>
- **제7조(포상)**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명예감사관에게 「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 상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9.11.8]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촉된 명예감사관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〈제589호, 2019.11.08〉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,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명예감사관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.